

안전인증소식

[Q&A]**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 중 꼭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제작하였습니다.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전기용품안전인증 유지관련 문의

당사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가 제품 생산이 끝나 전기용품안전인증을 유지하던 것을 반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1) 회사에서는 제품생산이 끝났으나 시장이나 판매처에서는 재고가 남아 판매유통되고 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 2) 제품 생산이 끝났어도 인증을 몇년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 규정 같은 것이 있는지요? 만약 그런 법규정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A nswer 문의하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생산이 종료되어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반납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되었으나, 안전인증이 취소되기 전에 제조, 출고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인증이 취소된 이후에 제조, 출고되는 경우에는 불법 전기용품 제조, 판매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생산이 종료되었으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위해 안전인증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uestion DVR(디지털비디오레코더)의 안전인증 취득 항목에 대한 문의

DVR을 국내에서 판매(나라장터)하려고 하는데 취득해야 할 인증은 무엇인지요? 또한, 전원 단을 보면 아답터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과 220V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의해 안전인증을 어떤 종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nswer DVR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나, 동 DVR이 전기적, 기계적으로 분리된 외부 직류전원장치로부터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동작되는 구조의 제품일 경우에는 동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DVR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직류전원장치는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은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Q uestion 전기용품안전인증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체검사 여부

2009년1월부터 KC마크로 바뀐 안전인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가 일본 공장에서 생산하는 스캐너는 바뀐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2008년 이전 법령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자율안전확인대상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자체검사와 그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고,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근거 법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nswer 09.1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제도는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원자재 · 공정검사와 제품시험 등의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는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이므로, 귀하게서 문의하신 자율안전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와 관련된 서류비치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등을 위해 자체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시기를 권고합니다.